



## “충간소음 피해자의 항의와 신고가 도를 넘습니다”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 〈설문〉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중인데요. 집안 곳곳 소음방지 매트를 깔아놓고 생활을 하지만 아랫집의 항의가 늘 끊이지 않습니다. 처음엔 메모로 오고가던 항의가 전화로, 직접 방문으로 이제는 경찰 신고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경찰 신고 시 충간소음이 아닌 제가 아이를 학대한다고 신고해서 정말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요즘은 아이가 조금만 뛰어도 밑에서 바닥을 치는 등 도를 지나친 행위에 저희도 피해를 입고 있어요. 이럴 경우 조치가 가능할까요?

Q. 네, 충간소음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부 산하 충간소음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들 가운데 충간소음 원인 대부분이 바닥

충격음이었다고 해요. 근데 뭐 애들 키우는 집이나 아니면 발걸음을 좀 쿵쿵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만 해도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디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웃 간에 어떤 이웃을 만나느냐도 사실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로 인한 충간소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 분도 그런 사례인 것 같은데 충간소음이 있을 경우 일단 가볍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나요?

▲배삼순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일단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애들이 뛰는 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애들이니까 뛰지, 어른이면 뛰겠나요. 그걸 또 말을 하면 들으면 어른이죠. 공동주택 충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 충간소음을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측정하지 않은 이상은 내가 초과를 했는지, 초과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아래층 사람이 민감한 건지의 기준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정을 해봐야 할텐데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민원접수를 하시면 거기 방문상담을 해서 현장으로 오시면 상담도 해주시고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니 그걸 이용해서서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고 이웃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Q. 많은 분들이 또 모르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층간소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라는 곳이 있어?**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 있으실텐데 지금 당장 층간소음이 고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사연을 보면요. 아랫집에서 직접 찾아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인 것 아닌가요?

▲ 조동휘 변호사(서우 법률사무소)= 물론 벨을 눌러서 강제적으로 집 안에 들어가거나 할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에 반하여 집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 없이 단순히 벨을 누르거나 찾아간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재미있는 가처분 결정에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년도에 나온 접근금지가처분 사건입니다. 이게 윗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집

에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두 번째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세 번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보내기, 네 번째로 고성 지르기, 다섯 번째로 천장 두드리기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냐하면요. 첫 번째로 집에 초인종 누르는 금지, 그 다음에 현관문 두드리기 금지에 대해서는 인용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초인종은 누르지 마라, 그리고 현관문을 두드리지 마라, 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을 해줬고요. 다만 전화나 문자메시지 금지, 그 다음에 고성지르기 금지, 그러니까 막 뛰지 마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런 걸 말하겠죠.

**Q. 좀 위협이 느껴질 수 있는 정도군요.**

▲ 조동휘 변호사= 그렇죠. 그리고 천장 두드리기, 그러니까 뛰지 마세요, 하면서 천장을 치는 거예요. 그런 행위 금지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층간소음 하지마세요, 라고 전화나 문자로 항의할 수도 있고 고성으로 항의할 수도 있고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정에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보니까 마치 그래서 초인종이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처럼 보도가 됐더라고요.

**Q. 네,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 조동휘 변호사= 네, 그건 그 결정문 취지를 잘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가 떠도는 것이 아마 이 가처분 결정을 계기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근데 본 가처분결정 사건에 대해서는요. 이 사건에서 집에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가 아랫집이 윗집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정도가 됐기 때문

에 이 사안에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였지, 일반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아, 네. 이번에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도 어? 경비실 통해서 아니면 올라가면 안돼,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조동휘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은 해보시고 만약에 해서 가처분 걸리시면, 하지말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 하시면 되고요. 다만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무조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Q.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확실히 알았네요. 그래서 올라가서 권고하는 정도는 뭐 문을 두드리면서 조금 조용해 해주세요, 시끄러워요, 이 정도는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약간은 위협을 가한다든지 뭐 소리를 지른다든지 천장을 두드린다든지 이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사연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찰 신고를 당하셨어요. 근데 아동학대라는 거짓제보로 신고를 당한 거잖아요. 이는 좀 역으로 사연인 입장에서도 피해자를 신고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했다고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어떨까요?**

▲배삼순 변호사= 네, 이걸 사안이 두 개가 섞여있는 건데요. 층간 소음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라는 게 성립하는 건데 타인을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

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객관적인 팩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동을 학대했다는 사실이 입증 가능한 사실이고 그게 만약에 객관적 진실과 반한다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소하실 때 다소 과장하는 건 가능할지라도 전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하시면 무고죄로 처벌받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Q. 네, 그렇죠. 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서 입증하기도 애매하고, 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좀 아닌 행동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좀 무고죄로 고소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이나 단독주택 또 주상복합이라든지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요. 법적으로 공동주택에 속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대상 관리보험에 속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경우가 참 애매하거든요, 사실.**

▲조동휘 변호사= 네, 우선 이 부분은 입법에 공백이 생긴 부분이라 일단 첫 번째로 생각 해볼 수 있는 건 지자체에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통해서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을 해왔더라고요. 공동주거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 다가구주택 등 여러 가지 개념들을 공동주거시설이라는 개념에 묶어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통해 입법의 공백을 메우는 방법이 있고요.  
(저작권자/법률방송뉴스)